

# 예산총칙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38,080,798	100,138,000
일반회계	2,858,259,681	85,747,000
일반회계	2,858,259,681	85,747,000
특별회계	479,821,117	14,391,000
공기업특별회계	215,531,843	6,465,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5,531,843	6,465,000
기타특별회계	264,289,274	7,926,000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9,017,002	27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7,286,623	6,218,00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5,182,947	455,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012,000	27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90,702	107,000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200,000	606,0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826,242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